

「자동차등록규칙」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현행법상 시·도간에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,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 할 수 있으나, 전국번호판 시행('04.1월~)으로 인해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양수자 등이 자동차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·도간의 자동차의 변경등록시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는
규정을 삭제(안 제29조제2항제4호)
- 나.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
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(별지 제15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37조제2항 중 “등록령 제31조제5항”을 “등록령 제3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동차양도증명서(양도인 · 양수인 직접 거래용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갑 (양도인)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전화번호		
	주소		
갑 공동명의자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전화번호		
	주소		
을 (양수인)	성명(명칭)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전화번호		
	주소		
을 공동명의자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전화번호	지분율(%)	
거래 내용	자동차등록번호	차종 및 차명	
	차대번호	매매일	
	매매금액	잔금지급일	
	자동차인도일	주행거리 km	

제1조(당사자표시) 양도인을 “갑”이라 하고, 양수인을 “을”이라 한다.

제2조(동시이행 등) “갑”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“을”에게 인도한다.

제3조(공과금부담)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,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“갑”이 부담하고,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“을”이 부담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4조(사고책임) “을”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.

제5조(법률상의 하자책임)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,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“갑”이 그 책임을 진다.

제6조(등록 지체 책임) “을”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“을”이 진다.

제7조(할부승계특약) “갑”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“을”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“을”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.

제8조(양도증명서)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 지니고 “을”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(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)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

특약사항:

수입인지
「인지세법」에 따름 (뒷면 여백에 붙임)

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,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장

양도인 (서명 또는 인) 양수인 (서명 또는 인)
양도인 공동명의자 (서명 또는 인) 양수인 공동명의자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양도인 주의사항: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.
- 양수인 주의사항: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, 압류·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공동사항: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(자동차매매업자 포함)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자동차정비, 검사, 주행거리 이력, 자동차세 납부 여부,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(“마이카정보”)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(www.ecar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.
-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,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(변경등록 신청) ① (생략)	제29조(변경등록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변경을 희망하는 경우(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)</u>	<u><삭 제></u>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제37조(말소등록 신청) ① (생략)	제37조(말소등록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의한다.	② 등록령 제31조제4항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